

통상 News Brief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SHIN & KIM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창간호
2020 Vol. 1



Content

창간사	03
동향분석 : 코로나 19시대 경제환경의 변화	04
이슈진단	07
1. 환율 상계관세 규정의 도입과 전망	07
2. 태국-필리핀 담배 관세평가 분쟁 : 거래상황 검토를 중심으로	10
3. 특별시장상황의 변화과정 및 COVID-19이후의 전망	13
1분기 주요 통상뉴스	16

창간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상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화와 무역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별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통상장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분산된 밸류체인을 재조정하고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간 대립은 국제적 통상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WTO 상소기구의 기능정지로 인해 1995년 WTO 출범 이후 정착되어 온 통상분쟁 해결체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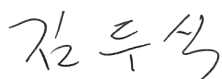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법무법인(유)세종은 국제통상법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국제통상법센터는 각국 통상법과 정책, 현안 이슈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고 정부나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제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기사와 통상관련 뉴스들을 모아 분기별로 제공하는 통상 News Brief를 발간, 배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통상 News Brief가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의 파고를 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6.

세종 국제통상법센터장



법무법인(유)세종 대표변호사

동향분석

코로나 19시대 경제환경의 변화

신각수 고문

작년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자마자 전격전으로 팬데믹이 된 코로나19는 전체적으로 이미 경기후퇴 국면에 들어가던 세계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확산을 저지하는데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수요·공급·금융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경험한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1% 성장을 했었고 대공황 때 성장률이 -1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위기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년간 일본과 독일의 GDP에 해당하는 9조 달러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WTO도 4월, 2020년도 세계무역이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북미, 분야별로는 자동차·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13%(최상 시나리오)-32%(최악 시나리오) 줄어 들고, 2021년 상황은 코로나19의 지속기간과 각국의 대응성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후 세계경제가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6년 걸렸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세계수요의 감소에 따른 무역경쟁의 격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확산을 진정시킨 중국을 제외하고는 주요시장이 코로나19 진압을 위해 봉쇄·차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중국도 상황이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위험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생산과 소비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국과 개도국은 최근 확산이 시작되면서 환율하락, 자금유출, 외채 증가, 재정수단 제약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가하락과 함께 원자재 가격하락도 산유국과 자원보유국의 수요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비대면·원격·탈도시화 등과 관련한 온라인교육, 로봇, 원격사무, 스마트 시티, 전자·무인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게임,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 의약품 등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의 중국 의존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생산량의 28%를 점하는 거대한 공장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정보 통제와 초기대응 실패로 코로나19의 팬데믹화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세계공급망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효율보다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기존 세계공급망과 가치사슬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리쇼어링과 지역공급망 구축이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서방과 중국 간에 책임론 공방은 반중 정서를 부채질하고 중국의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등 ‘중국 대 서방’의 구도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에 화웨이 5G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술 경쟁과 분리(decoupling)가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부과, 미국기술을 포함한 제품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연기금 대중투자 금지,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조사, 중국유학생 배제, 학술·연구교류 중지 등 대중 강경조치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양국 시장을 중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큼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각국에서 민족주의, 포퓰리즘, 대외배타주의, 일방주의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 만큼 보호주의 강화로 자유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위협도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더 미국이 미국우선주의, 일방주의, 동맹 경시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이 약화된 가운데 중국도 중국몽 실현을 위한 자국이익 확보에만 주력함으로써 국제질서가 각자도생이 만연하는 ‘G-제로’ 상황으로 발전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할 국제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해왔고 대외의존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출시장 확보, 자유무역질서 유지, 국내기업·해외투자기업의 원활한 조업 등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경제에 대비하는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호주의가 탄력을 받을 것임에 비추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부전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G20, APEC, ASEAN+3 등 다양한 기존 채널 및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유럽·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과 함께 유사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형태의 복합적 협조체제를 통해 보호주의 조치의 동결(standstill)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디커플링 심화에 대비한 우리 입장의 정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국의 상호 의존도에 비추어 완전 격리는 어렵겠지만 중국 견제에 관한 미국 내 초당적 분위기에 비추어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공급망이 조정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고 지역과 개별 국가로의 회귀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지역 단위 공급망 활성화에 대비하여 중층적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PTPP의 가입, RCEP의 조기 발효 및 동남아국가, 인도 등과의 기존 FTA 업그레이드 등을 꾀하여야 합니다. 공급망 재조정 과정에서 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력 있는 투자처로서의 환경 정비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이 부상할 성장산업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도 중요합니다. 팬데믹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고 기온 상승의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임이 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노력도 배가해야 합니다. 어려운 무역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원활한 출입국 환경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바, 우리의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양자·다자 협정의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기술, 격리시설 지정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방역 친화적이면서도 우리 경제인의 해외 출입국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한바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신용등급 하락, 환율 하락, 외자 이탈 등 연쇄작용을 통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증대되면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지만 완전 개방된 우리 금융시장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방어기제로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적어도 2년간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안정적 제조업기지로써 인식이 높아진 점을 잘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진단

환율 상계관세 규정의 도입과 전망

김재희 변호사

들어가며

美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0. 2. 4. ‘저평가된 통화의 교환(exchanges of undervalued currencies)’을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신설규정을 도입하였고, 2020. 4. 6.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¹

¹ § 351.502

Specificity of domestic subsidies.

(c) *Traded goods se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being provided to a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1(5A)(D) of the Act,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enterprises that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

§ 351.528

Exchanges of undervalued currencies.

(a) *Currency undervaluation—* (1) In general.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from the exchange of United States dollars for the currency of a country under review or investigation under a unified exchange rate system only if that country's currency is undervalued during the relevant period. In determining whether a country's currency is undervalued, the Secretary normally will take into account the gap between the country'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an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at achieves an external balance over the medium term that reflects appropriate policies (equilibrium REER).

(2) *Government action.* The Secretary normally will make an affirmative find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only if there has been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that contributes to an undervaluation of the currency. In assessing whether there has been such government action, the Secretary will not normally include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y of an independent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The Secretary may also consider the government's degree of transparency regarding actions that could alter the exchange rate.

(b) *Benefit—*(1) *In general.* Where the Secretary has made an affirmative find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normally wi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after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 (i) The 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 consistent with the equilibrium REER; and
- (ii) The actual 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 during the relevant time period, taking into account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2) *Amount of benefit.* Where there is a difference under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the amount of the benefit from a currency exchange normally will b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currency the firm received in exchange for United States dollars and the amount of currency that firm would have received absent the difference. Start Printed Page 6044 referred to in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미국 내에서는 그 동안 환율의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환율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환율저평가 보조금’이 인정되어 상계관세가 부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美 상무부는 이번 신설규정을 도입해 ‘환율저평가 보조금’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새롭게 개시될 상계관세 조사절차 및 기존 상계관세에 관한 연례재심 조사 절차 등을 통해 ‘환율저평가 보조금’에 관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및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따르면,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적주체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경제적 혜택(benefit)’ 및 ‘특정성(specificity)’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즉, 정부로부터 기업 또는 산업으로 금전 등 재정적 자원의 이동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기업 또는 산업이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그러한 혜택이 특정한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신설규정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을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설규정은 ‘재정적 기여’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환율에 의한 ‘통화의 교환’이 발생한 때 보조금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² 다음으로, ‘경제적 혜택’은 ‘정부 행위(government action)’로 인해 환율이 저평가된 경우 인정되는데, 균형 실질실효환율(equilibrium REER)과 환전 시 사용된 실제 환율을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³ 신설규정은 여기에서의 ‘정부 행위’에 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美 재무부의 의견 등을 청취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균형실질실효환율에 관하여는 다양한 산출법이 존재하는데, 신설규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조사절차에서 구체화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되어 ‘특정성’을 간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⁴

(c) Information sources. In applying this section, the Secretary will request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provide its evaluation and conclusion as to the determinations under paragraphs (a) and (b)(1) of this section.

² 19 CFR 351.528(a)

³ 19 CFR 351.528(b)

⁴ 19 CFR 351.502(c)

향후 전망

신설규정은 2020. 4. 6.부터 적용되고 있어 언제라도 ‘환율저평가 보조금’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사절차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COVID-19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신설규정에 의한 상계관세 조사 신청이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거 경제위기 직후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된 것처럼 COVID-19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 경우 수입 규제도 강화되어 ‘환율저평가 보조금’ 상계관세가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美 재무부가 한국은 ‘환율저평가 보조금’에 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신설규정이 도입된 이상 적어도 미국 기업들에 의해 ‘환율저평가 보조금’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⁵ 한 차례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인정되면 그 결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사건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바,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에 근거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⁵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 5. 13. 미국 상무부에 베트남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PVLT)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하여 신설규정에 따른 ‘환율저평가 보조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슈진단

태국-필리핀 담배 관세평가 분쟁 : 거래상황 검토를 중심으로

정진용 관세전문위원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WTO관세평가협정(이하 ‘평가협정’)상 특수관계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전제로 관세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가격의 관세목적 수용은 결정되며, 평가협정 제1.2(a)조에서는 판매를 둘러싼 거래상황을 검토(examin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이하, ‘거래상황 검토’)하여 그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관세평가⁶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이윤 극대화를 위해 특수관계사간 국제거래에서 각국 조세제도의 상이함을 활용하여 각 관계사의 기능과 위험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점차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이전가격 책정으로 이에 대한 관세평가는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태국-필리핀간 담배분쟁은 필리핀이 태국을 평가협정 위반, GATT 3조 내국민 대우 및 GATT 10조 무역규제 위반으로 WTO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에 제소한 사례로 평가협정 분쟁은 태국 관세당국이 필리핀의 태국의 담배 이전가격을 특수관계 영향을 이유로 부인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분쟁은 2010년 필리핀이 패널 절차에서 승소⁷ 하였으며, 이후 필리핀이 2018년과 2019년 DSU 제21.5조에 근거한 이행 적합성 절차를 청구하면서 각 2차례 패널 절차가 진행되었고 패널은 태국이 DSB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평가협정 제1.2(a)조 거래상황 검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3차례 패널의 주요 판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⁶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⁷ 필리핀은 항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에서도 최종 승소하였으나, 관세평가 쟁점은 태국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패널 판정의 주요내용

패널은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태국 관세당국의 과세처분이 평가협정 제1.2(a)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널은 평가협정 제1.2(a)조의 관세당국의 ‘조사(examine)’가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전 거래상황 전반에 대해 수입자가 제공한 자료 및 기타 입수한 정보를 최대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grounds and explanations)’ 전반의 절차를 ‘평가(evaluate)’ 해야한다는 전제에서 판결하였습니다. 패널은 태국 관세당국이 관세평가 당시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검토 후 여전히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과세통지 내용과 그 평가과정을 검토했을 때 결론적으로 평가협정 제1.2(a)조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⁸

본 판정 이후 DSU 제21.5조에 따른 필리핀의 청구로 2018년과 2019년 2차례 패널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동 절차에서는 태국 Board of Appeals(이하 'BoA')의 거래상황 검토에 따른 이전가격 부인과 태국 검찰이 저가신고를 이유로 태국 관세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기소(charge)절차에서 평가협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2018년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BoA는 필립모리스 태국의 재무자료를 활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하 'P&GE Rate')과 동종기업의 P&GE Rate 비교를 통한 거래상황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패널은 비교 검증에서 관세당국의 수행방법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나 평가협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비교가능성의 원칙(principles of comparabi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패널은 BoA의 비교검증은 비교대상 업체간 규모, 거래구조 차이, P&GE Rate 산출시 적용된 재무자료 기준차이 및 벤치마크 범위 결정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서 평가협정 제1.2(a)조에 근거한 거래상황 검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⁹

2019년 2차 패널 보고서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담배 이전가격 저가신고에 기인한 관세 등 조세포탈에 대한 검찰 기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평가협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태국 검찰은 수출자 세무당국에 보고된 생산자 가격정보(CK-21 Form)에 기초하여 구성가격(cost plus benchmark)을 산출하여 신고된 이전가격과 비교 검증을 하였습니다. 패널은 본 검증방법이 거래상황 검토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 방법은 평가협정 6조¹⁰가 ‘법적 기준(legal standard)’으로 참조되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⁸ Panel report - Thailand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WT/DS371/R), Paras. 7.181, 7.182, 7.189

⁹ Panel report - Thailand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WT/DS371/RW), Paras. 7.135, 7.180

¹⁰ 산정가격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및 조립 또는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치, 수출국의 생산자가 평가대상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인 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 이윤 및 일반 경비, 기타 필요한 제반 경비의 비용 또는 가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전제에서 패널은 CK-21Form의 사용은 수출자의 실제비용과 이익이 조세문제로 왜곡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정확성 검증이 불가능한 점을 사유로 평가협정 제1.2(a)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¹

판정의 의의

평가협정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거래상황 검토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각국의 관세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수행해왔으며, 패널도 관세당국의 방법론적 재량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동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관세당국의 이전가격 관세평가가 많은 재량에 비례하여 엄격한 검증절차와 의무준수가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패널은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평가 과정에서 관세당국이 제시된 제반 정보의 구체적 검토절차와 근거설명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협정 위반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칫, 관세당국이 부여된 재량을 오해하여 이전가격 부인을 위한 일방적인 주장, 부실한 자료검토 그리고 왜곡된 방법과 절차로 관세평가를 한다면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동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우려와 이는 평가협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임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또한, 패널은 거래상황 검토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평가협정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전제로 이익을 비교시 높은 비교가능성과 원가자료 활용시 수출자의 실제 정보와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만약 특수관계가 없다면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가치(actual value) 검증 일환으로 볼 때, 낮은 비교가능성과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중심의 통상환경에서 이전가격의 관세평가는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전가격에 대한 왜곡된 관세평가가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관세당국은 평가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¹¹ Panel report - Thailand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WT/DS371/RW2), Paras. 7.346, 7.355, 7.356, 7.357, 7.358, 7.359

이슈진단

특별시장상황의 변화과정 및 COVID-19이후의 전망

조명성 공인회계사

들어가며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후, 지지층인 러스트벨트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그 중에 두드러지는 정책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반덤핑 관세에 대하여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 또한 미국의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의 예외를 받지 못하면서, 대미 수출에 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본고에서는 미국이 펼친 두 가지 보호무역 정책 중 가장 변화가 심한 반덤핑 관세의 특별시장상황 적용에 대하여 취임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COVID-19에 의한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이 향후에 특별시장상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특별시장상황의 변화과정

1. 특별시장상황의 적용

1) 미국 관세법 개정전의 특별시장상황의 적용 사례

미국은 관세법 개정전인 2000년 10월 19일 일본산 신문용 대형 인쇄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일본내 조사대상물품의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성가격으로 계산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정전에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특별시장상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관세법 개정 후의 특별시장상황의 적용

2017년 4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관세법 개정 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열연재심 최종판정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유정용 강관 시장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는 예비판정에서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무부가 판정한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유정관 시장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근거는 한국 정부가 열연생산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한국정부가 전기료를 통제한다는 사실, 한국내 열연공급자와 강관 생산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중국산 저가 열연으로 인한 시장 악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산 유정관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이후에 비슷한 강관인 일반관, 송유관 등을 중심으로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도금강판으로 그 제품 범위를 점점 넓혀 왔으며, 한국산 제품들에 이어서 태국산, 터키산 강관으로 국가도 점차 확장하여 왔습니다. 여러 차례 반덤핑 조사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상무부는 특별시장상황 판단 사유들을 보강해 나갔으며 초반에 수출국가의 정부 보조금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서서히 국제 철강시장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으로 중심을 옮겨 갔으며, 이에 따라 조정방식도 변화하였습니다.

2. 특별시장상황의 적용 방법론의 변화 과정

개정된 관세법에 의하면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고 판정할 경우, 어떠한 조정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미 상무부는 생산자가 제출한 총원가(COP)에 PMS 만큼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상계관세 보조금율(Countervailing Duty Rate)의 적용

미 상무부는 유정관의 총원가에서 열연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국 열연제조업체들의 상계관세 보조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재료비에 가산하여 원가를 상승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유정관 케이스에서는 각각의 한국 열연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열연에 대하여 각각의 열연 생산업체가 미국에서 판정받은 상계관세 보조금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파이프 케이스에서는 수입산 열연에 대해서도 국내 열연 생산업체들의 상계관세 열연의 보조금의 평균을 적용하여 그 조정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2) 열연 회귀분석의 적용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열연 수입평균 가격(HRC AUV)과 철강의 초과생산능력간의 회귀선을 구하고 현재의 가동률이 정상 가동률인 80% 수준에서 결정된 열연의 평균가격과 현재의 열연 평균가격간의 차이를 원가에 가산하는 PMS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의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하여 현재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 원가의 구매 원재료분에 17.29%를 가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 향후 PMS의 적용 전망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유래 없는 마이너스 유가 사태 등 현재의 시장상황이야 말로 그동안 미국의 철강업체들이 열정적으로 주장해왔던 특별시장상황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특별시장상황의 적용을 크던 작던 변화시켜왔으며, 이러한 국제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미국이 팬데믹이 지속된 기간 동안의 생산원가나 수출국 시장의 판매가격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현재 특별시장상황의 적용 방법을 바꾸지 않고 현재의 적용방법을 유지하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철강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다면, 2020년 특별시장상황으로 인한 정상가격 산정 기초 원가가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케이스의 특별시장상황의 적용율은 17%이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20년의 철강생산량이 20% 감소한다고 하면 특별시장상황의 적용율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다만 최근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구성가격계산시 외에 원가미만테스트(sales-below-cost test) 등에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상무부가 CIT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특별시장상황의 적용범위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없어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관 및 일부 품목들의 경우 향후에도 특별시장상황의 적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하지 못하는 품목에는 불리한 가용 정보의 적용(AFA)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팬데믹이후 러스트벨트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올릴 것을 대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 주요 통상뉴스

(2020.01.01. - 2020.04.31.)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발효 (01.01.)

중국이 기존의 외국투자와 관련한 3개의 법을 통합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동 법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관련 처벌규정 신설, 기술이전 강요금지,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허용분야 확대 등이 반영되어 있다.

[Key word] #중국 #투자 #외국인투자법 #외상투자법 #무역전쟁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WCO, HS 2022 채택 (01.08.)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기술 및 국제교역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채택하였다. HS 2022는 새롭게 등장한 물품들을 분류하고, 국제 사회의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로 의의가 있다. HS 202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word] #WCO #세계관세기구 #HS코드 #품목분류 #품목분류체계 #HS 2022

미국-중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01.15.) 및 중국,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제품 관세 인하 등 마-중 무역합의 1단계 이행발표 (02.06.)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86페이지에 이르는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의 농업시장 개방, 영업기밀 보호강화, 위조품 혹은 복제품의 폐기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규정 강화, 강제기술이전 및 경쟁적인 환율절하 금지, 금융시장 개방완화, 향후 2년간 2000억불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제조품, 에너지 및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계획 중인 추가관세부과를 철회하고, 기존에 부과된 관세율을 낮춘다.

2020년 2월 6일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일부 농산품에 부과된 관세인하 및 수량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산 농산물 및 공산품을 일부 구매했다고 발표하였다.

Key word #무역전쟁 #미국 #중국 #관세 #농업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환율 #금융

미국-EU-일본, 보조금 및 강제기술이전 이슈 언급 (01.15.)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1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WTO의 보조금협정이 시장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WTO 보조금협정에 새로운 유형의 금지보조금을 도입할 것과 보조금관련 제소국의 입증부담 완화, WTO회원국들의 보조금 통보규칙 검토, 공공기관(Public Body)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전은 공정하고 자발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상호 성장과 개발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추후 강제기술이전을 규제할 주요 규정들을 논의할 것을 발표하였다.

Key word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WTO 보조금협정 #보조금 #기술이전

OECD, 디지털 서비스 및 소비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디지털세금 기본 합의안 발표 (01.29.~30.)

2020년 1월 OECD에서는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합의안에는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 기준,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단순성, 조세확실성 추구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세 과세대상을 기존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OECD는 올해말까지 합의문을 만들고 내년 이후에는 규범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특정 디지털기업에 대하여 2%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Key word #OECD #디지털세 #digital tax #디지털무역 #디지털통상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제품에 대한 제232조 적용확대 결정 (02.08.)

트럼프대통령은 2월 8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상의 관세를 일부 파생상품(derivative goods)에도 부과하겠다는 성명서(proclamation)를 발표하였다.

반면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수입산 ‘티타늄 스폰지(titanium sponge)’에 대해서는 제232조상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으로 티타늄 스폰지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은 미국 상무부의 결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Key word #미국 #일본 #제232조 #국가안보 #철강 #알루미늄

미국,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발효 (02.13.)

미국의회는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을 공식발효하였다. 동 법은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다. 동 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심의하는 관계 부처 합동기관으로 재무부를 비롯한 16개의 행정부처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기존의 지배적 투자에서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 및 외국의 미국 부동산거래로 확대되었다.

동 위원회에서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자발적으로 철회되거나 대통령이 특정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ey word] #미국 #외국인투자 #FIRRMA #CFIUS #국가안보 #핵심기술 #핵심인프라
#민감개인정보

EU, WTO 승인없이도 보복관세 부과가능하도록 하는 EU규정 변경 제안 (04.08.)

EU 회원국들은 통상집행규정(Enforcement Regulation)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2019년 12월부터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동 제안서에는 EU가 WTO의 승인없이도 보복관세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서는 통상집행규정의 적용범위를 EU 무역상대국이 불법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제3국이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방해하거나 EU와 체결한 양자간/지역간 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장치의 진행을 막는 경우가 포함된다.

[Key word] #EU #WTO #상소기구 #집행규정 #보복조치 #보복관세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구성원

센 터 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고 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주일대사) |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 러시아 공사) |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도열 (전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국제통상 전재민 (변호사) | 윤영원 (변호사) | 김재희 (변호사) | 이상협 (변호사) | 오미연 (캐나다, 미국변호사) | 박경진 (박사, 전문위원)

무역구제 강정수 (공인회계사) | 조명성 (공인회계사) | 고영해 (미국회계사) | 장슬기 (미국회계사) | 장유림 (영국회계사)

관 세 우도훈 (변호사) | 한정화 (관세사) | 정진용 (관세사)

연 락 처 02-316-4114 www.shinkim.com